

#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中國中醫科學院 醫史文獻研究所\*\*  
金基郁·朴炫局·朴晶禧·梁峻\*\*

## 关于秦汉醫政史的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中國中醫科學院 醫史文獻研究所  
金基郁·朴炫局·朴晶禧·梁峻

向医药学影响了直接效应的医药政策及为了贯彻这样政策设立的医药组织机构和各种医药事业制度等, 都是现代医政管理和药政管理体系的构成部分。医政管理和药政管理都保健福祉的重要构成部分。医政和药政这名词概念自从近现代开始使用的, 不过本论文上言及的概念都是王朝社会的内容。尽管王朝社会没用医政和药政这名词概念, 但是与现代的医政和药政概念差不多一样。由而本论文上用现代的“医政”概念开展研究, 关于在王朝社会上医政并其影响医学发展。

论者最近和中国梁峻教授合作并进行关于自从秦汉时代到清朝的医政史共同研究, 把它当作基根向后韩医学有关的我国政策及教育, 保健行政等方面上, 盼望活用以参考资料。

本论文是这般研究作业的第一头绪, 至于自从形成中国最初统一国家的秦朝到汉朝的医政史, 秦汉的政策概要, 秦汉医药政策, 关于医政机构秦汉医官制度的作用, 秦汉医药政策和医药发展关系, 秦汉医政评价和形成原因等分成五个方面后, 进行研究并整理报告其结果。

Key Words : 醫政, 秦, 漢, 太醫令, 太醫丞, 侍醫, 周禮, 藝文志, 李柱國

## I. 서론

한의학이 수천 년 간 내려오면서 쇠퇴하지 않은 까닭은 그 독특한 이론체계와 과학성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물의 존재와 발전은 내부적인 요인에 근거하고 또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조건도 갖추고 있다. 한의학도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의학의 존재와 발전은 한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소 이외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외재적인 요인들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외재적인 영향 가운데 정책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의학 발전에 상응하는 정책은 의학 발전을 돕고 촉진하며 이와 반대로 맞지 않는 정책은 발전을 저해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고대사회에서 의약분야에 대한 皇帝의 경향에 따라 형성된 의약정책과 그것이 의약학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속에 기본규율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날 의약정책에 역사적인 본모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치가 의약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의약분야와 관련된 제도, 정책, 법령 등은 의약학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典章 제도 및 국정방침과 정책 등은 의약학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에서

\* 교신저자: 金基郁,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54) 770-2664, kkw@dongguk.ac.kr

는 직접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작용이 어떤 경우에는 함께 섞여져 있어 분리하기가 어렵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언급하였다.

의약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정책 및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립한 의약조직기구와 각종 의약사업제도 등이 현대 醫政管理와 藥政管理體系를 구성하고 있다. 의정관리와 약정관리는 모두 보건복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의정과 약정 등 명사적인 개념은 근현대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급된 것은 모두 왕조사회의 내용이다. 왕조사회에서 의정과 약정이라는 명사적인 개념을 쓰지는 않았지만 현대 의정, 약정관리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醫政”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왕조사회의 의약정책, 의약사업제도, 의약조직기구 등에 사용하여 왕조사회에서의 의정과 그것이 의학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왕조사회의 의정에 대한 윤곽을 확정할 다음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책”이라는 명사개념을 사용하는 문제이다. “정책” 역시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사용되기 시작한 명사이다. 왕조사회에서 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책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황제의 詔, 頒, 敕, 諭 및 정부의 각종 政令 등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책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 어떠한 단어 하나로 이런 종류의 단어가 내포한 뜻을 대신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것은 왕조사회의 의약에 대한 정책기원을 세밀히 분석하면 바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왕조사회에서 의약정책은 대부분 의약행정관리 부분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황제 자신의 의약에 대한 好惡에 따라 직접 詔命을 공포하고 정부의 의약정책으로 삼았다. 그 다음 대신 등이 방안을 제출하고 황제의 인가를 거친 뒤에 정책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황제의 언행에 벗어나는 일체의 문서조항은 모두 황제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집권의 특징은 어떤 의약정책의 시행과 폐지를 공포하더라

도 모두 황제(섭정 황후 혹은 권신을 포함) 개인적인 사상문화의 소양, 인품과 덕성의 수양, 의약에 대한 인식과 중시 정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왕조사회의 醫政연구는 집정한 황제의 의약에 대한 경향 및 이것과 의약학 발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변했다.

둘째는 의정의 작용, 효과에 대한 문제이다. 의정연구는 의정의 형성, 발전에 대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작용,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의정의 작용, 효과에 대한 평가는 먼저 그 작용하는 대상이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왕조사회에서 의정의 작용 대상은 주로 의약학이다<sup>1)</sup>. 의약학(즉 약학)은 또한 학술과 사업의 개념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 정치가 의약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할 때 학술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언급하였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하였다. 의정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해 말하자면 보통 각 사항에 대한 의약정책의 조성, 형성, 공포 및 당시의 배경 등은 문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만 대개 실행을 관철시킨 효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헌의 각도에서 실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로는 황제가 詔命을 공포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관철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다. 의정의 작용, 효과의 다른 방면은 의약관리기구와 업무조직의 작용과 기능이다. 이런 조직기구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그 조직구조를 잘 파악한 뒤에 실시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도 단지 각 기구의 인원수, 官品의 俸祿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각 기구의 隸屬관계 및 지위, 설치 원인 및 의학발전에 미치는 작용과 그 의의, 각 기구의 흥망변화 및 그 배후 원인 등을 밝히는 데에 있다. 왕조사회에서 각종 기구의 설치는 모두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과 기존에 있던 기구의 확대, 축소, 폐지 등은 통치자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조직적인 시책이다. 의약조직기구의 설치도 예외는 아니다. 왕조사회에서 각종 의약기구의 설치는 통치자가 해

1) 서술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뒤 문장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시사항 혹은 의학과 약학을 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醫學」이라는 명사를 의약학을 대신해서 사용한다.

당 醫政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조직적인 시책이다. 비록 각종 의약기구의 설치동기 및 형성과정에 대한 문헌 기록이 간략하게 남아있고, 어떤 기구는 단지 그 명칭과 각 官員의 숫자만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기구라도 설령 규모가 가장 작은 기구라고 해도 그 형성 과정이 단순한 인사배치나 행정명명보다 복잡하다고 본다. 또한 조직기구 같은 것은 일단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고정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따라서 醫政의 작용을 언급할 때에는 단순히 의약정책의 작용만을 중시할게 아니라 의정조직기구가 의학발전에 미치는 작용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醫政을 보다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본자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梁峻 교수와 협력하여 진한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의정사를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한의학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및 교육, 보건 행정 등의 분야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작업의 첫 번째 단초로써, 중국의 최초 통일국가를 형성한 秦朝 이후부터 漢代까지의 醫政史에 관하여 秦漢의 정치 개요, 秦漢의 의약정책, 의정기구에 대한 秦漢 醫官제도의 작용, 秦漢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秦漢 醫政의 평가와 형성 원인의 다섯 가지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정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秦漢의 정치 개요

이 시기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B.C. 221) 시기로부터 魏·文帝 黃初 元年(A.D. 220)까지 대략 441년 기간이다.

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朴炫局 외 2人.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李良松 외 1人. 中國傳統文化與醫學. 廈門大學出版社. 1990.  
 李經緯 외 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2000.

秦은 商鞅의 變法을 실행한 이래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秦王 嬴政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 아래 B.C. 230년부터 시작된 1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 六國을 병합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를 세웠다.

秦朝가 세워지고 처음 시작은 영주제도를 폐지하고, 郡縣을 설치하고, 車輪의 폭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시켰는데, 이러한 일련의 법령은 통일된 전제주의의 중앙집권을 공고히 하여 경제와 문화발전을 추동시켰다. 또한 각 민족 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등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진시황은 또 다시 토목건설 공사를 크게 일으켜 궁전과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백성들을 변방으로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원성이 나날이 높아졌다. 기존 옛 귀족의 잔여세력의 존재 또한 秦王朝에 잠복되어 있는 위기였다.

“焚書坑儒”로 인하여 秦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확대되었다. B.C. 209년에 陳勝과 吳廣이 이끄는 농민의 봉기가 일어났다. 잇달아 劉邦과 項羽도 봉기를 일으켜 秦王朝을 빠르게 멸망해갔다. 이후 楚漢전쟁을 거치면서 B.C. 202년에 項羽와 싸워 이긴 劉邦이 西漢 王朝을 세웠다. A.D. 8년 王莽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국호는 新이라 하였으나 15년 만에 멸망했다. A.D. 25년에 劉邦의 후손인 劉秀가 왕망을 멸하고 東漢 王朝을 세웠다. 유방이 西漢을 건국한 후로부터 東漢 獻帝인 劉協이 魏·文帝인 曹조에게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426년이 걸렸다.

秦漢의 정치제도는 대부분 같고 다만 王莽이 이것을 흠모하여 제도를 개혁할 당시 정치제도의 명칭만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光武帝가 중흥하여 모두 복구시켰다. 秦漢은 君主政體이고 황제는 최고 권력자였다. “중앙 관리로 중요한 사람은 秦에서 丞相이고 그 직무는 모든 정치를 총괄하는 것이다.”<sup>3)</sup> 漢은 秦의 제도를 이어받았는데, 光武帝 때에 太尉(司馬), 司徒, 司空 등 이른바 “三公”이 丞相의 권력을 분권하였고 정치적 책임을 함께 졌다<sup>4)</sup>. 그 사이에 尙書臺의

3) 紀昀 等撰. 歷代官職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43.

4) 紀昀 等撰. 歷代官職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43.

세력이 암암리에 성장하여 尙書令은 황제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점차 승상의 지위를 대체하였다. 중앙에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九卿과 六部가 설치되어 있다. 九卿은 奉常, 郎中令, 衛尉, 太僕, 廷尉, 典客, 宗正, 治粟內史 및 少府를 포함하고 있다. 少府는 궁중의 관리 및 황제의 재물 출입을 관리하고 “황제의 옥새를 대신 관리하고, 서류에 옥새를 날인하고, 尙書令도 모두 少府의 직속 관리이다.”<sup>5)</sup> 그래서 少府는 九卿 가운데 황제와 가장 밀접한 기밀 부서이다. 醫藥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업이다. 처음에 중앙집권정부가 각종 사업에 따라 주된 기관을 설치하고 예속관계를 확정한 당시 中央醫政長官인 太醫令 역시 少府의 屬官으로 확정되었다. 秦에서 淸에 이르기까지 2천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의학의 예속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황제의 심복 부서로 예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 2. 秦漢 의약정책

### 1) 의학문헌을 보존·정리한 정책

秦에 전하를 통일한 始皇의 출현으로 모든 정책의 흥망은 황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그러므로 醫藥 역시 예외 없이 이러한 흐름에 따랐다. B.C. 213년에 秦始皇은 丞相인 李斯의 진언을 받아들여 詔令을 내려 焚書를 시행하였는데, 先秦 이래로 전해 내려온 풍부한 典籍이 거의 불타버렸으나 의학문헌은 오히려 안전했다. 정부가 문헌소각을 실시했을 당시 의학문헌의 보존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의학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秦王朝의 의약정책 규정일 뿐만 아니라 후세 정부가 의약정책을 제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시황제의 의학에 대한 공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진시황의 의학문헌 보존정책은 先秦시대의 의학 전적이 광범하게 전해 내려오도록 해주었다. 西漢정부도 비교적 의학을 중시하였다. 成帝 河平 3년(B.C. 26)에 “上以中秘書頗散亡, 使謁者陳農求遺書于天下

…… 侍醫李柱國校方技”<sup>6)</sup>하였다. 李柱國은 수집한 의학문헌에 대해 輯校 整理하여 醫經類는 7家 216권, 經方類는 11家 274권, 房中類는 8家 86권, 神仙類는 10家 205권으로 나누었다. 이씨는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의학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의 체계적인 輯校 정리를 통해 고대의학문헌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내려올 수 있었으며 후세 의학학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이는 이주국 개인의 공적임과 동시에 특히 西漢 成帝 때 문화를 보존하는 정책을 개승한 것에 있다. 의학문헌을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정책의 지원 없이 개인의 역량에 의거해서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漢·成帝가 의학문헌을 수집, 정리, 輯校한 정책 역시 진시황이 焚書할 당시에 의학문헌을 태우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의학학에 불멸의 공적을 남겼다. 동시에 의학학 분야를 중시하는 후세 통치자들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었다.

### 2) 官醫의 소집과 민간의학 관리제도의 형성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형성된 의학전수 전통은 진한시기에도 계승되었다. 이 시기에 전문 직종인 醫生이 대량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華佗, 吳普, 樊阿 등이다. 동시에 師徒가 전승하는 맥락도 나날이 현저해졌다. 秦漢 때에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수립되어 관리들이 급속히 증가되었다. 황제가 지존한 지위로 확립됨에 따라 황제, 황실의 의학보전 업무가 중요한 위치로 격상되었다. 진한의 통일국가에 아직 의학학교가 설립되지 않았고 황제나 황실 사람들은 최고의 사들에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宮廷에 근무하는 의생들은 전국각지의 名醫중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일종의 소집제도가 형성되었고 皇宮에서도 점차 의료진이 조직되었다.

예를 들면 西漢 元光원년(B.C. 134)에 전국 각지에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그 중에 醫師도 포함되어 있었다. 平帝 元始5년(A.D. 5)에 또한 “徵天下通知…… 方術, 本草及以五經 …… 教授者 …… 遣詣京

5) 紀昀 等撰, 歷代官職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p. 703-704.

6)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553.

師。至者數千人”<sup>7)</sup>하였다. 궁정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상설된 의약인원을 선발한 것 이외에 황제의 병이 위중하거나 官醫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시로 민간의생을 초빙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國家徵醫巫，常爲駕”<sup>8)</sup>하였다. 황제나 황제의 친척의 질병을 치료하면 후한 상금을 주었다. 武帝 때 “醫修氏刺治武帝得二千萬耳”<sup>9)</sup> 하였다. 이외는 상반되게 초빙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은 隱士들과 영향력이 작은 의생들이 민간에서 의술을 행하고 약을 팔았다. 東漢시기 韋著는 “延熹二年(A.D. 159), 桓帝公車備禮徵，至霸陵稱病歸，乃入雲陽山，采藥不返”<sup>10)</sup>하였으며, 또한 台修은 “隱于武安山，鑿穴爲居，采藥爲業”<sup>11)</sup>하였다.

전한시기에 정부가 민간의생을 관리한 기록이 드물게 남아있다. 王莽이 새로운 법을 시행 할 때 일찍이 “…… 工匠·醫·巫·卜·祝及他方技·商販·賈人，皆各自占所爲于其所之，縣官除其本，計其利十分之，而以其一爲貢。敢不自占，自占不以實者，盡沒入所采取而作縣官一歲”<sup>12)</sup>라 규정하였다. 이때에 민간의약은 이미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였고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王莽이 新法을 실시하였을 때 醫，卜，匠人에 대한 관리 규정은 봉건사회 초기에 민간의생의 관리제도에 대해 초보적인 형성을 상징하고 있다. 후세 정부가 민간의사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는데 경험을 제공하였다.

### 3) 역병과 秦漢정부의 대책

- 7) 徐天麟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西漢會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9\*283.
- 8) 徐天麟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西漢會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9\*148.
- 9)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1\*302.
- 10)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665.
- 11)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3\*621.
- 12)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672.

(1) 역병과 西漢 정부의 대책  
“疫”은 고대에서 “역병”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집집마다 비슷한 질병을 앓는 것을 모두 “疫”이라 불렀다. 秦과 西漢 전기(B.C. 2세기 전후)에 “疫”병이 유행하였다는 기록은 몇 차례도 안 된다. 그러나 서한 후기(B.C. 1세기 및 기원후)에는 “疫”병 유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候元원년(B.C. 88)부터 元始2년(A.D. 2)까지 90년 간 적어도 13차례나 발생했고 비교적 큰 역병은 5차례 있었다. 西漢 정부는 “疫”의 유행에 대해 대책을 세웠는데, 주로 3가지로 개괄된다.

첫째 租賦를 면제해주었다. 元康2년(B.C. 64)에 宣帝가 명하길 “今天下頗被疾疫之災，朕甚愍之，其令郡國被災甚者，毋出今年租賦”<sup>13)</sup>라 하였다.

둘째 大官의 膳과 樂을 줄였다. 初元원년(B.C. 48)에 元帝가 “六月以民疾疫，令大官損膳減樂”<sup>14)</sup>하라고 명하였다.

셋째 임시로 時疫 병원을 세웠다. 元始2년(A.D. 2) 郡國에 가뭄과 해충의 피해가 컸다. 平帝는 “民疾疫者，空舍邸第，爲置醫藥”<sup>15)</sup>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것이 최초로 기록에 나타난 公立 임시 時疫병원이다. 西漢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역병이 어느 정도 통제되었고 백성들도 다소 재난을 줄일 수 있었다.

王莽의 新朝 시기에도 역병이 발생하였는데, 비교적 피해가 컸던 적은 地皇3년(A.D. 22)에 왕망에 반기를 든 綠林軍에서 “大疾疫，死者且半”<sup>16)</sup>하였다. 시기가 전란 중이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지방에서도 역병이 매우 창궐하여 그 피해가 몹시 심했다.

### (2) 역병과 東漢정부의 대책

- 13)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141.
- 14)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151.
- 15)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179.
- 16)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461.

동한은 역사적으로 역병이 비교적 심각하게 퍼졌던 시기이다. 동한 196년(A.D. 25~220년) 동안에 발생한 역병은 기록에 나타난 것만 22차례 달한다. 중국 紀年방식과 양력에 따라 역병이 발생한 연대를 열거한 것이 【표 1】이다.

諡號	年號	양력	諡號	年號	양력	諡號	年號	양력		
光武帝	建武13	37	安帝	永初4	110	靈帝	建寧4	171		
	建武14	38		元初6	119		熹平2	173		
	建武20	44		延光4	125		光和2	179		
	建武22	46	劉祐	元嘉1	151		光和5	182		
建武25	49	桓帝			延熹4	161	中平2	185		
建武26	50		劉志	延熹5		162	獻帝	建安13	208	
和帝	永元4	92			延熹9	166		劉協	建安22	217
									劉肇	建安24

표 1 東漢시대 역병 발생연대표

【표 1】에서 열거된 22번의 역병은 正史의 기록에 나타난다. 표에서 열거한 연대는 역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연대이다. 일반적으로 역병이 어느 해에 발생하였고 어느 해에 그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속 시기가 비교적 긴 것도 있다. 표에서 나타난 延光 4년(A.D. 125) 겨울에 발생한 역병이 다음해(永建 원년, A.D. 126)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해를 넘기는 역병은 표에서 시작된 연도만 열거하여 한번 유행했던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역병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2년간의 모든 대책이 포함된다. 22번의 역병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다. 建安 22년(A.D. 217년)에 역병이 유행하여 생긴 피해에 대하여 魏陳의 思王이 역병에 걸려 말하길 “家家有強尸之痛, 室室有號泣之哀, 或闔門而殞, 或舉族而喪”이라 하였다.

東漢정부는 역병 유행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첫째 순행하면서 병을 진찰하고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建武十四年, 會稽大疫, 死者萬數, 意獨身自隱親, 經給醫藥, 所部多蒙全濟”<sup>17)</sup>하였다. 이는 東漢시기에 역병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백성에게 의약

품을 나눠주기 시작한 발단이 되었다. 이후 永元 4년, 元初 6년, 元嘉 원년, 建寧 4년, 熹平 2년, 光和 2년에 6차례 역병이 유행했을 당시, 중앙정부에서 中謁者나 使者 등을 파견하여 역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시찰하고 의약품을 하사하였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역병이 퍼지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하였으나 큰 역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둘째로 임시로 격리시키는 병원을 설립하였다. 延熹5년(A.D. 162)에 皇甫規가 隴右를 징벌할 때 “軍中大疫, 死者十三四. 規親入庵廬, 巡視將士, 三軍感悅”<sup>18)</sup>하였다. 庵廬은 역병 환자를 임시로 안치해놓은 곳이며,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격리병원을 설립한 시초라고 보고 있다.

셋째는 田租를 감면하였다. 延光 4년(A.D. 125)에 “冬, 京都大疫”<sup>19)</sup>하여 그 다음해까지 지속되었다. 永建 원년(A.D. 126년) 甲辰일에 “以疫癘水潦, 令人半輸今年田租, 傷害什四以上, 勿收責, 不滿者, 以實際之”<sup>20)</sup>할 것을 명하였다.

넷째는 창고를 열어 식량을 방출하고 棺木을 하사하였다. 永元 4년(A.D. 92)에 “時有疾疫, 褒巡行病徒, 爲致醫藥, 經理包粥, 多蒙濟活”<sup>21)</sup>하였다. 元初 6년(A.D. 119)에 “夏四月, 會稽大疫, 遣光祿大夫將太醫循行疾病, 賜棺木, 除田租·口賦”<sup>22)</sup>하였다. 延熹 5년(A.D. 162)에 度尙은 “遇時疾疫, 穀貴人飢, 尙開倉廩給, 營救疾者, 百姓蒙其濟”<sup>23)</sup>하였다. 상술한 대책은 대부분 東漢 중기에 安帝 劉祐, 順帝 劉保, 桓帝 劉志, 靈帝 劉宏이 집정하던 때에 詔令을 내려 실행한

17)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3\*7.  
 18)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3\*333.  
 19)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351.  
 20)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126.  
 21)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786.  
 22)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117.  
 23)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824.

것이다. 그밖에 일부는 지방 및 군대관리 鐘離意, 皇甫規, 曹褒, 度尙 등이 행한 것이다.

황제와 지방관리, 군대관리가 제정한 정책이나 혹은 채택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고대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이 탄생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특히 지적할만한 것은 靈帝인 劉宏이 집정하던 기간에 5번의 큰 역병이 발생하였는데(【표 1】 참조), 그 중에 3번(A.D. 171, 173, 179년)은 모두 中謁者 등을 파견하여 병세를 살피고 의약품을 하사하였다. 역병을 방지하고 백성의 질병에 관심을 기울인 東漢시대의 황제 중에서 劉宏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와 반대로 東漢 초기 光武帝인 劉秀가 집정하던 때에 역병이 6번 발생했고 동한 말기 獻帝인 劉協이 집정하던 시기에도 3번의 큰 역병이 들었지만, 이 두 황제는 역병을 막기 위한 어떠한 詔令도 내리지 않았고 백성의 생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특히 獻帝 시기인 建安 이래로 발생한 3번의 큰 역병은 피해가 더욱 심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光武帝 시대에는 국가의 대란이 평정되고 모든 것을 재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防疫와 같은 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현재 때에는 漢室이 쇠퇴하여 황제는 꼭두각시가 되었고 권신과 제후가 서로 분쟁을 일삼아 황제는 일신의 안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백성의 안위는 살피지 못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것을 요약하면 정책 요소는 역병의 예방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치가 안정되면 정책에 힘을 얻게 되어 역병도 즉시 통제할 수 있었고, 정치가 혼란하면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고 역병은 퍼져나갔다.

4) 불노장생에 대한 욕구와 오도된 의약정책

秦漢시기에서는 황제의 지존한 지위가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확정되어 황제는 자신의 지위가 영원히 보존되길 원하였기 때문에 장생불사를 원했다. 秦始皇과 漢武帝의武功은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허비하면서 仙藥을 찾았던 것도 다른 황제들이 미칠 수 없었다.

六國을 병합하고 천하를 굴복시켜 至高無上한 皇權과 장생에 대한 욕망이 秦始皇으로 하여금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소비하면서 仙人과 불사약을 찾게 하였다. 그 때에 “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 方丈, 瀛洲, 仙人居之…… 于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仙”<sup>24)</sup>하였으나 “方士徐市等入海求神藥, 數歲不得”<sup>25)</sup>하였다. 시황제는 또한 “使韓終, 侯公, 石生求仙人不死之藥”<sup>26)</sup>하였다. 진시황이 서거하던 해(B.C. 210년)에도 역시 “南至湘山, 遂登會稽并海上, 冀遇海中三神山之奇藥…….”<sup>27)</sup>하였다. “始皇遣使者數人入海未至蓬萊山輒風波而還, 立祠阜鄉亭海邊十處”(唐類函)하였다. 이와 같이 진시황이 선약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또한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秦法, 不得兼方, 不驗, 輒死”(『史記正義』에서 秦法의 시행에 不得兼方이라 한 것은 백성들이 가진 方技에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험하여 효험이 없으면 곧 죽음을 내렸다는 것은 법이 혹독함을 말한다)<sup>28)</sup>고 하였다. 따라서 方士가 선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즉시 효험을 보는 방이 없으면 도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여러 유생들이 조정의 정책을 논쟁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원인들이 진시황이 咸陽에서 460여 명을 “坑儒”하게 하였다.

漢代에 長生術을 찾은 황제 가운데 武帝 劉徹이 으뜸이었다. 「武帝內傳」의 의하면 “李少君字云翼齊國臨淄人, 好道”(『唐類函』)라 기재되어 있다. “以祠竈, 設道, 卻老方見上, 上尊之. …… 少君言于上曰: 祠竈則致物, 致物而丹沙可化爲黃金, 黃金成以爲飲食器則益壽, 益壽而海中蓬萊仙者可見, 見之以封禪則不死, 黃帝是也. 臣嘗游海上, 見安期生, 食臣棗, 大如瓜. 安期生仙者, 通蓬萊中, 合則見人, 不合則隱, 于是天子始視祠竈, 而遣方士入海求蓬萊安期生之屬, 而事化丹沙諸藥劑爲黃金矣”<sup>29)</sup>라 하였고 “于是上甚尊敬, 爲立

24)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160.  
 25)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166.  
 26)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161.  
 27) 袁駟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集解.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5\*324.  
 28)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164.

屋第”(『唐類函』)하였다. 이때에 “齊人少翁以鬼神方見上……于是乃拜少翁爲文成將軍……”<sup>30)</sup>하였다. 선약을 찾으려는 목적에 따라 武帝가 동쪽의 해상을 순찰하였는데 “齊人之上疏言神怪奇方者以數萬, 然無驗者. 乃益發船, 令言海中神山者數千人求蓬萊神人”<sup>31)</sup>하였다.

漢·元封 3년에 “公孫卿言見神人東萊山, 若云‘見天子’. 天子于是幸緱氏城, 拜卿爲中大夫. 遂至東萊, 宿留之數日, 毋所見, 見大人迹. 復遣方士求神怪采芝藥以千數”<sup>32)</sup>하였다. 武帝는 한편으로 많은 方士를 파견하여 선약을 구하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중에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作柏梁銅柱承露仙人掌之屬”<sup>33)</sup>하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썼던 간에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사실 武帝는 方士, 巫, 祝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是時, 方士及諸神巫多聚京師, 率皆左道惑衆, 變幻無所不爲, 女巫往來宮中, 教美人度尻, 每屋輒埋木人祭祀之, …… 上怒, 所殺後宮延及大臣, 死者數百人. 上心既以爲疑, 嘗書寢, 夢木人數千持杖欲擊上, 上驚寤, 因是禮不平, 遂苦忽忽善忘…… 江充…… 言上疾出在巫蠱. 于是, 上以充爲使者, 治巫蠱獄. …… 自京師, 三輔連及郡·國, 坐而死者前後數萬人”<sup>34)</sup>하였다. 征和 4년(B.C. 89년)에 田千秋가 때맞추어 武帝에게 간언하길 “方士言神仙者甚衆, 而無顯功, 臣請皆罷斥遣之!” 上曰: (大鴻臚言是也) 于是悉罷諸方士侯神人者. 是後上每對群臣自嘆: 向時愚惑, 爲方士所欺, 天下豈有仙人, 盡妖妄耳! 節食服藥, 差可少病而已”<sup>35)</sup>라 하였다.

漢代 황제 가운데 武帝 이외에 처음에 귀신을 믿

다가 나중에 간언을 받아들여 신선의 술을 멀리한 경우도 있었다. 宣帝 神爵 원년(B.C. 61년)에 “京兆尹張敞亦上疏諫曰: ‘願明主…… 斥遠方士之虛語, ……’ 上由是悉罷尙方待詔(여기서 尙方은 기물을 만드는 尙方이 아니다. 尙은 주인이고 主는 方藥이다)”<sup>36)</sup>하였다. 宣帝인 劉詢이 신선술을 멀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尙方待詔를 모두 파면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成帝인 劉駑도 “頗好鬼神·方術之屬, 上書言祭祀方術得待詔者甚衆, 祠祭費用頗多. 谷永說上曰: ‘…… 言世有仙人, 服食不終之藥…… 皆奸人惑衆…… 唯陛下拒絕此類, 毋令奸人有以窺朝者!’ 上善其言”<sup>37)</sup>하였다. 成帝가 간언을 받아 들여 무제가 선약을 구했던 것과 같은 진찰을 밟지 않았고, 또한 宣帝 때와 같은 과격한 행위도 피하였는데 그 태도는 정확한 것이다. 王莽도 “興神仙事, 以方士蘇藥言, 起八風臺, 臺成萬金. 又種王梁禾于殿中, 先以寶玉漬種, 計粟斛成一金”<sup>38)</sup>이라 하였다. 그러나 翟義의 도당인 王孫慶을 잡은 후에 “莽使太醫, 尙方與巧屠共劊割之, 量度五藏, 以竹筵導其脈, 知所終始, 云可以治病”<sup>39)</sup>하였다. 王莽의 이러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인체해부의 선례로 변화하였다. 秦漢의 황제 중에서 天命만 믿고 의술이나 약학은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高祖擊布時, 爲流矢所中, 行道病. 病甚, 呂後迎良醫. 醫入見…… 高祖嫚罵之曰: ‘吾以布衣提三尺劍取天下, 此非天命乎? 命乃在天, 雖扁鵲何益!’ 遂不使治病, 賜金五十斤罷之”<sup>40)</sup>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의약에 관한 경향이 황제에 따라 달랐고 醫政에 대한 詔令도 달랐다. 高祖인 劉邦은 천명을 믿고 의학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있더라도 치료를 거부하였다. 秦始皇과 漢武帝는 소극적인 숙명론을 믿지 않고 仙藥을 복용

29) 張守節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正義.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47\*418.

30)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268.

31)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276.

32)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277.

33)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579.

34)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407.

35)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413.

36)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475.

37)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576.

38)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677.

39)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4\*688.

40)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3\*231.



해야 장생불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량의 인력과 재화를 투입하여 선약을 찾았다. 황제의 詔令과 의학발전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어 의학이 발전하는 규율에 부합하는 詔令은 의학발전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진시황이 焚書할 때 의학 문헌은 태우지 말도록 조령을 내려 의학발전에 촉진 작용을 하였다.

秦漢의 수립으로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장해 주었다. 진한시기의 의학정책은 통일된 봉건국가가 의학정책을 추진하는 발단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의학문헌을 보존하고 정리하는 정책을 반포하였고, 역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宮廷에 의학관리를 초빙하여 임용, 편성하고 민간의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두 이 시기의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조치였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봉건사회에서 의학정책의 규정을 제정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다. 동시에 진시황과 한무제 등이 長生仙藥을 구하기 위해 내놓은 의학의 객관적인 규율에 위배되는 일련의 정책은 이 시기 의학 사업에 손실을 끼쳤다. 그러므로 진한의 正反 두 측면의 醫政 경험이 후세 의학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 3. 의정기구에 대한 秦漢 醫官제도의 작용

#### 1) 醫官 설치의 특징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가 의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직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진한시대의 의관 설치는 先秦시대에 비해 정원이 늘어났고, 직책의 구분이 명확하고, 계급 순서와 예측이 비교적 분명하였다.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전국시기에 秦에서 창시한 최고 醫政長官 제도인 太醫令 제도는 秦漢시대에 확립되고 완성되었다. 둘째, 醫政과 藥政을 통일적으로 이끌었고, 또한 醫丞과 藥丞을 설치하고 분담하여 관리하였다. 셋째, 宮廷 醫官은 일정한 규모로 설치하였다. 넷째, 諸侯의 왕국에 의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군대에 醫藥과 醫官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여섯째, 주요 의관의 職品과 俸祿에 일정한 표준이 있었다.

#### 2) 太醫令·丞 제도

太醫令은 고대에 설치된 최고 醫政長官이다. 이 직책의 설치는 전국시대 秦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秦太醫令李醯”<sup>41)</sup>는 기재에 나타나는 이 관직의 최초 任職者이다. 秦이 천하를 통일하였고, 의료제도 역시 전국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太醫令丞, 亦主醫藥, 屬少府”<sup>42)</sup>하였다. “秦制爵二十等”<sup>43)</sup>하였는데, 태의령의 職品이 몇 등급에 속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기록이 없다. 그러나 “少府의 爵位爲九等”<sup>44)</sup>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태의령은 少府에 예속된 관리이기 때문에 그의 작위는 8등 혹은 그 이하이다(秦의 작위 등급은 숫자가 큰 것이 관직이 더 높다).

西漢시기에는 두 가지 태의령이 설치되었다. 하나는 太常에 관리하는 것에 속하고 태상에는 “屬官有太樂, 太祝, 太宰, 太史, 太卜, 太醫六令丞”<sup>45)</sup>이 있다. 太常에 소속된 태의령의 녹봉은 아직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續漢志』에 기재된 太史, 太祝, 太宰, 太樂令의 녹봉은 6백 석이다. 태의령은 위에 서술한 관리와 같이 예속되어 있고 같은 직급의 관원이므로 태의령의 녹봉은 6백 석이 되어야 한다.

西漢에 또 다른 태의령은 少府에 속한 관리로 소부는 “屬官有尙書, 符節, 太醫, 太官 ……” 등의 令丞이 있다<sup>46)</sup>. 소부에 속한 태의령의 녹봉 역시 정확한 기록이 없고, 太常 및 기타 九卿에 속한 녹봉을 참조하면 소부에 속한 태의령의 녹봉 역시 6백 석이다. 秦漢에는 녹봉으로 관원의 등급이 정해졌는데, 녹봉에 몇 등급이 있는 것이 관원의 등급을 나타낸다. 작위는 즉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며, 작위, 녹봉, 관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41) 司馬遷 撰,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 700.

42) 紀昀 等撰, 歷代官職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p. 671, 674.

43)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2\*428.

44) 李良松 외1인 : 『中國傳統文化與醫學』, 廈門大學出版社, 1990, p. 140.

45)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352.

46)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354.

西漢의 작위 변동은 秦代에 비해 매우 적어 진의 작위는 20등급이고, 서한은 “增加諸侯王一等爲二十一級”<sup>47)</sup>이다. 秦의 녹봉 차이는 고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西漢秩爲十六等, 卽是官有十六級”<sup>48)</sup>이었다. 지금 『漢書外戚傳』에 의거하여 작위와 조정 관리의 대응 관계를 나열하고 이 관계를 참조하면 태의령의 지위를 알 수 있다.

관리 등급	작위
丞相	諸侯王
上卿	列侯
中二千石	關內侯
眞二千石	大上造
二千石	少上造
千石	中更, 左更
八百石	右庶長, 左庶長
六百石	五大夫

표 2 『漢書外戚傳』에 의거한 爵位와 朝廷 官吏의 대응 관계

서한시기에 왜 太常과 少府에 각각 태의령을 설치했는지는 史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王應麟은 “其屬於太常的, 如後之太醫院之職. 其屬於少府的, 則如後之藥房官隸于內府相似”<sup>49)</sup>라 하였다. 王氏의 해석은 한편으로 두 태의령 연혁의 변천을 말해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태의령 직능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太常의 太醫丞은 정부의 위생행정장관 및 궁정 내에 여러 太醫의 책임자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직책은 점차 후세의 太醫署, 太醫院 등 의약관리기구로 변천하였다. 그리고 少府의 태의령은 皇宮에서 약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직책으로 여기에서 후세 약품을 관리하는 尙藥局으로 변천하였다.

서한시대에 두 태의령을 설치한 원인은 주로 진한 초기에 정부와 황실의 직책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秦漢 이전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황실의 재산, 기능이 거의 혼동되어 있었고, 정부의 관

원이 황실의 家臣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隋唐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황실의 재산이 점차 분리되었고, 정부 관원과 황실 관리의 직책도 점차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진한시기에 정부와 황실의 기능, 재산을 나누려고 하였으나 완전하게 나누지 못한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 정부에 太常, 少府, 大司農 등 이른바 九卿이 설치되었지만 그러나 少府, 太仆, 衛尉 등의 벼슬[卿]은 모두 황제의 衣食住行,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 부서의 성격을 띤 卿은 太常, 大司農, 大鴻臚 등 몇 개만 있었다.

太常은 秦 시기에 奉常이라 명명하였고, 景帝가 太常으로 개명하였으며, 王莽이 秩宗으로 바꾸었고, 東漢에 太常이라 칭하였다. 太常의 직무는 조정의 宗廟禮儀를 관장하고 또한 시험을 주관하며 왕에게 大事가 있으면 禮를 행하는 것을 세우 받들어 지킨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太常在 이 시기에 정부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담당하였고 太史, 太宰, 太祝, 太卜, 太醫, 太樂 등의 丞이 모두 그 官屬이다<sup>50)</sup>. 그러므로 太醫 등 丞·조도 정부 행정관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少府와 大司農은 모두 財政官이지만 대사농은 국가의 재물을 관리하고 소부는 황제를 봉양하는 것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소부의 屬官은 황제의 의, 식, 주, 오락, 보건, 사무 등의 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sup>51)</sup>. 이러한 屬官이 관리하는 사무는 모두 구체적이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황제를 위해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항들이다. 소부에 설치된 태의령도 황제에게 직접 봉사하는 성질에 속한다. 따라서 태의령은 御用 약물을 직접 관리하고 의약 방면에 있어서 황제를 직접 봉사했다. 이는 太常 태의령이 행정관원의 성격을 띠면서 또한 황실에 대해 봉사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으로 보면 少府屬官의 성질은 정부와 황실을 동일시하는 고대사회의 흔적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太常屬官은 정부와 황실이 혼동된 것에서 순전히 정부관원으로 되어 가는 추세를 구현하였다.

서한시기에 한편으로는 정부관원의 형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太常에 太醫丞을 설립하였고, 다른 한편

47)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16.  
4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16.  
49) 紀昀 等撰. 歷代官職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675.

50)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5.  
51)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5.

으로는 황족의 의료보건의 편리를 위해서 소부에 또한 태의령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두 태의령이 설치되었다.

東漢시기에는 太常에 속하는 太醫令·丞을 없애고, 少府에만 태의령을 설치하여 “太醫令一人, 六百石, …… 掌諸醫. 藥丞, 方丞各一人. …… 藥丞主藥. 方丞主藥方”<sup>52)</sup>하였다. 이와 같이 의약의 위생행정을 태의령에 통일시켜 관리하고 아울러 醫政과 藥政을 분리하고 또한 각 한 명의 전임 조을 두어 책임지게 하는 체제는 의약관리가 초기 단계에서 한층 더 진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東漢에 이러한 진보가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秦과 西漢의 의관 설치에 폐단이 있었다. 예컨대 서한에 있었던 두 태의령은 太常과 少府로 나뉘어 관리되어 합작 등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둘째는 동한시기 少府의 권력이 서한에 비해 보다 커졌고 단순히 황제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서 侍中(2천석에 비김)·中常侍(2천석) 등 관의 중요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소부는 황제의 의, 식, 주, 행, 오락 등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이끌고, 顧問, 대응하고, 止宿禁中하였기 때문에 황제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게 되었다. 소부의 권력 확대는 의약행정이 통일적으로 소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보장해주었다.

셋째는 의학 발전, 약물학 진보, 『神農本草經』과 같은 약학 전문저서의 출현 등이며 또한 醫藥同源이라는 각자 특유한 객관적인 관계에서 東漢의 의약관리체계가 형성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3) 宮廷醫官 설치

秦漢은 통일된 봉건국가로 皇權이 至高無上하여 황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중시하였다. 따라서 진한의 宮廷 내에 의관 설치가 갈수록 늘어났고 직책의 구분이 갈수록 세분화되었으며, 東漢시기에 이르러서는 궁정의 위생조직이 상당히 방대해졌다.

52)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424.

秦 때에는 宮廷에 “侍醫”<sup>53)</sup>를 두어 황제를 모셨다. 太醫令 이외에 太醫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자료의 부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醫官을 설치하는 수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西漢 때에는 侍醫 등의 의관 이외에 “太醫”<sup>54)</sup>·“乳醫”<sup>55)</sup>(즉 산부인과 의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이외에 “醫侍詔”<sup>56)</sup>·“本草侍詔”<sup>57)</sup>·“典領方藥”<sup>58)</sup> 등을 설치하고 제왕의 질병이 위중하거나 궁중 侍醫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에는 명을 내려 궁궐에 들어와 근무하였다. 西漢에는 太醫監이라는 직책이 아직 없어 “太醫監屬少府”하여 太醫令이 관리하였고, 그 나머지 “乳醫”·“醫侍詔” 등이 太常 태의령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少府 태의령이 관리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동한시기에 이르러 서한의 궁정 내에 설치되어 있던 侍醫·乳醫·太醫 등의 의관 이외에 “太醫監”이라는 職名이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尙藥監”<sup>59)</sup>을 증설해서 약품을 관리하고 황후의 궁중에 “中宮藥長一人, 四百石”<sup>60)</sup>을 증설하여 황후 및 皇妃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와 상대적으로 궁중에 暴室을 설치하였다. 『漢官儀』에서 “暴室, 在掖庭內, 丞一人, 主宮中婦人疾病者. 其皇后, 貴人有罪者, 亦就此室”<sup>61)</sup>이라 하였다. “掖庭令一人, 六百石”<sup>62)</sup>이고 少府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 이외에 약으로 황제를 독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章和以下, 中宮

53) 司馬遷 撰.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 635.

54) 司馬遷 撰.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 700.

55)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1\*295.

56)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1\*173.

57)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598.

58)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0\*411.

59)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3\*224.

60)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430.

61) 彭大翼.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山堂肆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78\*630.

62)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1\*721.

稍廣，加嘗藥·太官 …… 皆六百石”<sup>63)</sup>하였다. 황제가 병이 들어 약물을 사용할 때에 먼저 嘗藥官이 약을 맛보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였다. 『漢官』에 東漢 궁정에 “員醫二百九十三人，員吏十九人”<sup>64)</sup>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시기에 궁정 의관의 규모가 방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地方醫官 설치

서한시기부터 지방의관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漢書·武五子傳第33』에 燕王이 “得書以符璽屬醫工長”<sup>65)</sup>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顏師古는 “…… 醫工長，王宮主醫者也”<sup>66)</sup>라 하였다. 이 관직은 동한시기에도 바꾸지 않고 계승하였다. 『後漢書·第五倫傳』에는 “舉孝廉，補淮陽國醫工長，隨王之國，光武所見，甚異之.”<sup>67)</sup>라 기재하고 있다. 醫工長은 왕국 내의 醫政長官이고 그 아래에 “侍醫·太醫·尙方等醫官”<sup>68)</sup>을 두었다. “皇子封王其郡爲國”<sup>69)</sup>하였다. “國은 兩漢의 고유한 지방 조직으로 등급은 郡과 같지만, 제도·관리는 郡과 약간 차이가 있다.”<sup>70)</sup> 왕국의 “주요 관리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 400석 이하의 관리는 왕이 임명한다.”<sup>71)</sup> 醫工長은 400석에 해당하는 관직이므로 왕이 임명하였다. 秦과 서한의 郡 및 동한 말기의 州牧은 國과 등급이 같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醫官을 설치한 곳은 없었다.

#### 5) 軍隊醫官 설치

군대는 통치계급의 도구이고 의약 역시 군대의 전투력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설비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으로 秦代 군대에서 의관 설치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兩漢시기에 흩어진 일부 자료가 비로소 나타난다. 『海錄碎事』에 “灌夫身中大創十餘，適有萬金良藥，故得不死。”<sup>72)</sup>라 기재되어 있다. 1931년 서북 시찰단이 居延 부근의 烽燧에서 대량의 漢簡과 유물을 발견하였고 그 중에 軍用 藥函과 약을 담은 자루의 잔해도 있었는데<sup>73)</sup>, 그 위에 “顯名陰藥函”<sup>74)</sup>과 같은 글자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과 사실은 漢代 군대에 전쟁 구호 약품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밖에 군대의 환자 명단, 질병통계장부, 의사와 간병하는 사람의 근무 장부, 군대 부상자 기록부 …… 또한 “元鳳元年”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sup>75)</sup>. 정규 부대 이외에 진한시대에는 백성들을 모집해서 국경의 요새로 보내 농경을 하게하고 변방을 강화시켰다.

文帝 때 晁錯이 移民을 위해 醫師와 巫師를 설치하여 “以救疾病，以修祭祀”<sup>76)</sup>할 것을 건의하였다. 『後漢書』에 光武帝가 太中大夫를 보내어 서쪽을 징벌한 關西·병사 중에서 死傷者에게 의약과 관을 보내고, 大司馬 이하 장군들은 친히 죽은 이를 조문하고 부상자를 위문하여 검허하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 이러한 정황은 漢代 邊防軍에 醫官·醫藥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지만 조직의 형식·예속 관계는 분명치 않다. 兩漢의 內地軍, 禁衛軍에 의약이 설치된 상황은 史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漢官』에는 B.C. 1세기에 宮醫衛士 8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武職 계열이고, 光祿助에 예속되어 있었다<sup>77)</sup>. 이는 禁衛軍의

63)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428.

64)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1\*687.

65)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0\*455.

66)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0\*455.

67)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3\*2.

68) 徐天麟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西漢會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9\*210.

69)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2\*428.

70)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18.

7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18.

72) 葉廷珪.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海錄碎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21\*705.

73)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59.

74) 羅振玉 : 『流沙墜簡』. p. 13.

75)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59.

76)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0\*241.

77)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59.

醫藥人으로서 보인다.

6) 진한의 醫官 설치는 醫政기구가 탄생한 기초이다.

진한시기에 궁정, 지방, 군대에 의관을 설치된 것은 이 시기에 의약정책을 관철시키고, 통치자가 의약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한 조직적인 조치이다. 이 시기의 의관은 先秦시기에 의관을 설치한 경험을 계승하고, 또한 당시 의약의 수요를 결합시킨 기초 위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의관의 단계 확정, 각자의 직책 구분, 상하 예측관계 확립 등에서 선진시대 이전보다 더욱 진보하였다. 이 시기 의약관리의 실천과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봉건사회의 醫官을 통하여 후세 의약 관리 기구를 탄생시키는 기초를 닦았다.

4. 秦漢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1) 秦漢의 통일정책은 문헌정리와 의학 분과를 촉진하였다.

일찍이 진시황은 “收天下書, 不中用者盡去之”<sup>78)</sup>라 하여 秦朝는 圖書를 증정한 문헌 정리를 시행하였고, 그 가운데 상당수의 의학서적도 포함되었다. 진한시기에 규모가 비교적 큰 문헌 정리, 작업을 전개시켰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西漢의 成帝가 문헌을 수집 정리하는 정책<sup>79)</sup>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秦漢 前期에 집중되고 통일된 정책으로 소급된다.

통일된 정권의 수립으로 전국각지에 분산되어있던 의학문헌을 한데 모을 수 있었다. 문자의 통일 정책은 문헌을 통일되게 輯校하고 편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도량형 통일은 약물의 규격, 藥量, 의료 기계 등에 통일된 표준을 제공하였다. 진시황의 焚書

에서 의학문헌은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先秦 이래로부터 전해오는 의학문헌이 보존될 수 있었다. 진시황과 한 무제가 불로장생하는 약을 구했던 행위는 動物, 植物, 鑛物藥의 발견을 어느 정도 촉진시켜, 房中, 養生術, 약물을 상응하게 증가시켰다.

西漢의 李柱國이 의학문헌을 대량으로 정리 연구한 뒤 이를 醫經, 經方, 房中, 神仙 등 4가지로 나눴다<sup>80)</sup>. 이로써 당시 기초이론과 임상은 이미 문헌의 각도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性生理, 보건 문헌이 증가되어 하나의 분야로 부각되었다. 養生, 食療로 병을 예방하고, 延年하는 분야의 문헌도 대량으로 증가하여 神仙類에 귀속되었다.

經方은 11家 288권<sup>81)</sup>으로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정신신경과, 湯液食禁, 침구, 안마, 약물 등의 방면 문헌을 포함한다. 의학문헌의 이러한 歸類는 당시 의학 분과의 진보를 반영하고 있다.

2) 영토 확장과 문화교류로 약물지식의 總結을 촉진하였다.

진시황의 공적은 중국을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확장시켰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의 조건은 약물의 인식과 총결에 기초를 세웠다. 농민이 토지, 식물과 접촉하는 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식물의 약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瓜蒂는 催吐시키고, 巴豆는 瀉下시키는 등이다. 漢代 煮鹽業에서 鹽水가 明目하고, 芒硝가 瀉下하는 등을 발견하였다. 冶鐵業의 발전으로 강철로 만든 침이 탄생하였고 광물약이 증가되었다. 蔡倫이 종이를 만들어 漢代에 이미 종이로 약을 포장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武發篋中有裹藥二枚, ……”<sup>82)</sup>라 하여 종이로 포장하였다. 車輪쪽의 통일은 교통의 발달을 가져와 각 민족 간의 교류와 의학지식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張騫이 西域으로 원정 갔다가 돌아올 때 紅花·胡麻·苜蓿 등의 약을 가지고 왔다. A.D. 4년에 “黃支國(남인

78)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95.

79)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799. “至秦患之, 乃燔滅文章, 以忠黔首. 漢興, 改秦之敗, 大收篇籍, 廣開獻書之路. 迄孝武世, 書缺簡脫, 禮壞樂崩, 聖上喟然而稱曰: ‘朕甚閱焉!’ 於是建藏書之策, 置寫書之官, 下及諸子傳說, 皆充秘府. 至成帝時, 以書頗散亡, 使謁者陳農求遺書於天下. 詔光祿大夫劉向校經傳, 諸子, 詩賦, 步兵校尉任宏校兵書, 太史令尹咸校數術, 侍醫李柱國校方技. 每一書已, 向輒條其篇目, 撮其指意, 錄而奏之. 會向卒, 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

80)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42.

81)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42.

82)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1\*295.

도 달라나비다국, 인도 동안)遣使獻生犀牛”<sup>83)</sup>하였다. 약물지식은上古부터 계속 누적되어 전해 내려왔고 秦漢시기에 더욱 풍부해졌기 때문에 최초의本草專書인『神農本草經』이 탄생되게 되었다. 이 책의原著는 일찍이 실전되었지만 그 내용은 梁·陶弘景의『本草經集注』등 후세 본초저작에 선별되어 기재되어있다. 明清시대에 이 책에 대한 정리복구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清·顧觀光과 孫星衍의 輯佚本이 나와 있다. 이 책 이외에 진한시대에『子儀本草』,『桐君采藥錄』,『雷公藥對』등 많은 본초저작들이 있다. 이러한 본초서는 모두 흩어져서 없어졌지만 이 시기에 약학 지식이 상당히 풍부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전쟁과 역병이 임상의학의 발전에 조건을 제공하였다.

東漢 후기에 환관과 외적이 권력을 독점하여 중앙 집권 내부에 모순이 더욱 깊어졌고 호족 지주의 통치가 더욱 심화되었다. 통치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였기 때문에 지식계에 대한 정치적 속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지식인의 사상이 비교적 개방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자연과학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張仲景의『傷寒雜病論』이 그 중에 하나이다.

동한 말기에 정치가 극히 부패했다. A.D. 184년 張角이 이끄는 黃巾軍의 봉기가 결국 일어났다. 통치자가 농민봉기를 진압하고부터 제후 간에 서로 합병하기까지 전쟁은 지속되었다. 오랜 전쟁으로 外傷科 환자가 대량으로 생겼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상을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을 찾고 연구하게 하였다. 따라서 마취약 및 外科術이 곧 응용되어 생겨났다. 華佗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걸출한 의가로 그가 처음으로 만든 “麻沸散”<sup>84)</sup>과 외과수술은 바로 이러한 전란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다.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瘟疫의 유행 또한 임상 의학이 발전하는 원인이었다. 동한시기에 張仲景, 華佗

와 같은 걸출한 임상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환경, 전란 등의 원인 이외에 瘟疫이 유행하여 백성의 생명이 매우 위급해졌고, 심지어 의가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그 위협이 미친 것이 곧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東漢은 중국 역사상 瘟疫이 비교적 창궐한 시기였고, 張仲景이 살았던 시기(A.D. 150~219년)에 비교적 큰 瘟疫이 12차례나 발생했으며, 적은 것은 더욱 많이 유행하였다. 장중경의 宗族이 2백 여 명 넘었으나 建安 이래로 10년도 못되어 疫病에 감염되어 죽은 자가 3/4가 되었는데<sup>85)</sup>, 그러나 이 역병은 正史에 기록되지 않은 국부적인 역병이었다. 建安 紀年 이래로 正史의 기록에 나타난 3번의 瘟疫(즉 建安 13, 22, 24년)은 피해가 더욱 컸다<sup>86)</sup>. 이와 같이 창궐한 瘟疫은 첫째 의가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연구하게 하여 역병을 막는 책임감을 증대시켰다. 둘째는 의가들의 의료 실천을 위해 충분한 환자를 제공해 주었다. 張仲景의『傷寒雜病論』이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탄생하였다.

진시황이 醫籍을 불태우지 않고 漢·成帝가 遺書를 널리 구하고 方技를 교정하는 등의 정책은 모두 의약 문헌을 보존하고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고 의학에 대해 확실히 공헌을 바가 있다. 秦漢 정부가 확립한 醫官제도는 국가의약 관리체계 및 궁정 의료진을 구축하기 위한 경험을 모색한 것으로 의약관리기구의 탄생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仙藥을 찾기 위해 내린 詔書과 조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명을 받는 일부 方士가 동물, 식물, 광물에서 養生, 보전에 좋은 약물을 찾아내어 약물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진한정부는 역병에 대해서 일찍이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목적은 백성들의 재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 일정 범위와 어느 정도에 있어서 이러한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큰 역병이 돌 경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근본적으로 통제할

83)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49\*179.

84)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3\*605.

85) 張仲景 著. 趙開美 原刻. 仲景全書.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 20.

8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20.

수 없었다. 이러한 임무는 하는 수 없이 후세에 남겨 두게 되었다.

## 5. 秦漢 醫政의 평가와 형성 원인

### 1) 진한 의정에 대한 평가

진시황이 의약서적을 불태우지 않고 漢·成帝가 遺書를 널리 구하고 方技를 교정하는 등의 정책은 모두 의약문헌을 보존하고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고 의학에 대해 확실히 공헌을 바가 있다. 秦漢 정부가 확립한 醫官제도는 국가 의약관리체계 및 궁정 의료진을 구축하기 위한 경험을 모색한 것으로 의약관리기구의 탄생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仙藥을 찾기 위해 내린 詔令과 조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명을 받은 일부 方士가 동물, 식물, 광물에서 養生, 보전에 좋은 약물을 찾아내어 약물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진한정부는 역병에 대해서 일찍이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목적은 백성들의 재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 일정 범위와 어느 정도에 있어서 이러한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큰 역병이 돌 경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임무는 하는 수 없이 후세에 남겨 두게 되었다.

### 2) 秦漢醫政이 형성된 원인

#### (1) 정치적인 요인

진한의 통일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先秦의 醫政은 특히 秦의 의정 전통은 秦漢 의정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선진시기 秦은 의약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명의가 있었다. 다른 諸侯에서 항상 진의 명의를 초빙하여 치료하였는데, 醫緩과 醫和가 晉侯의 초청을 받아 병을 치료한 것이 그 예이다. 이 밖에 의정 설치에서 『史記』에 기재된 太醫令 제도 및 궁정에 侍醫 설치 모두 秦에서 나왔다. 秦은 의약발전을 중요시하는 전통과 의정 관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진시황 또한 秦 문화의 薰陶를 직접

받아 자란 인물이다. 그러므로 秦朝의 통일로 秦문화 역시 자연적으로 전국으로 보급되었고 의약사상을 중시하는 전통 역시 焚書에서 구현되어 나온 것으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秦朝가 비록 짧았지만 의약을 보존, 발전시킨 정책과 醫官을 설치한 경험은 漢代 내지는 모든 왕조의 醫政에 기초를 닦았다. 漢·成帝 시기에 천하의 遺書를 널리 구하고 李柱國에게 명하여 方技를 교정하게 한 조치와 한대에 의관직을 설립한 것 모두 秦代의 의정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 (2) 사상문화적인 요인

秦漢시기 의약정책 및 의정시설은 이 시기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기의 사상문화 요소의 영향도 받았다. 先秦시기 諸子의 논쟁이 동양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역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았고 귀신을 믿는 미신이 백성들의 생각을 뒤덮고 있었다. 우매한 사상은 일반인에 대해 말하자면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유치하게 표현하여 사회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 그러나 봉건황제에 대해 말하자면 이러한 우매함은 역사적인 비극을 연출할 수도 있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장생불사의 신선술을 믿음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들여 靈丹妙藥을 찾아다녔으나, 결국에는 인력과 물자만 낭비하고 어떤 소득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그러므로 진한시대 의정형성은 이 시기의 사상문화의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秦漢의 통일국가 건립은 의관 설치를 규격화, 제도화시켰고, 의약문헌을 보호, 정리하는 정책은 선진시대의 의약지식을 잘 전승하고 축적시켰고, 경제문화의 교류와 신선을 찾아 仙藥을 구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모두 본초지식을 풍부하게 하여 마침내 『神農本草經』이 탄생하였다. 漢末에 흐트러진 정치와 전쟁과 瘟疫의 위협에 놓인 사회에 華佗, 張仲景과 같은 명의가 요구되었다. 『傷寒雜病論』은 臨證醫學의 성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총결한 것이다.

### Ⅲ. 結 論

秦始皇이 醫籍을 焚書坑儒에서 제외시키고 漢·成帝가 遺書를 널리 구하고 方技를 교정하는 등의 정책은 醫籍을 보존하고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秦漢 정부가 확립한 醫官제도는 국가의약관리체제와 궁정 의료진을 구축하기 위한 경험을 모색한 것으로 의약관리기구의 탄생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秦始皇과 漢·武帝가 仙藥을 찾기 위해 내린 詔令과 조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方士들이 동물, 식물, 광물에서 養生과 건강에 유익한 약물을 찾아내어 약물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진한정부는 역병에 대해서 일찍이 대책을 마련하여 백성들의 구제하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역병이 크게 유행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진한의 통일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정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先秦의 醫政 특히 秦의 의정은 秦漢 의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선진시기의 秦은 의약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명의가 많았는데 醫緩과 醫和가 그 예이다. 이밖에 의정 설치에서 太醫令 제도 및 궁정에 侍醫 등 것 모두 秦에서 나왔다. 秦朝가 짧았지만 의약을 보존, 발전시킨 정책과 醫官을 설치한 경험은 漢代 내지는 후대 왕조의 醫政에 기초를 닦았다. 漢·成帝 시기에 천하의 遺書를 널리 구하고 李柱國에게 명하여 方技를 교정하게 한 조치와 한대에 의관직을 설립한 것 모두 秦代의 의정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통일국가는 의관 설치를 규격화, 제도화시켰고, 의약문헌을 보호, 정리하는 정책은 선진시대의 의약지식을 잘 전승하고 축적시켰고, 경제문화의 교류와 신선을 찾아 仙藥을 구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모두 본초지식을 풍부하게 하여 마침내 『神農本草經』이 탄생하였다. 漢末에 정치적인 혼란으로 전쟁과 瘟疫의 위협에 직면한 사회에 華佗와 張仲景과 같은 명의가 요구되었다. 『傷寒雜病論』은 臨證醫學의 성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총결한 것이다.

### Ⅳ. 參考文獻

<단행본>

1. 廖育群 著.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2.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2000.
3.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6. 李良松 외1人. 中國傳統文化與醫學. 廈門大學出版社. 1990.
7. 紀昀 等撰. 歷代官職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8. 張仲景 著. 趙開美 原刻. 仲景全書. 서울. 大星出版社. 1984.
9.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0. 徐天麟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西漢會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1. 班固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前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2. 范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後漢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3. 司馬遷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4. 裴駟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集解.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5. 張守節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史記正義.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6.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7. 彭大翼.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山堂肆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8. 葉廷珪.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海錄碎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